

하남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

의안 번호	315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8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위탁사무명 : 하남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 및 「사회복지시설급식법」 제5조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의2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7조, 제13조, 제21조

○ 추진필요성

- 하남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5.12.31. 만료예정
- 일관성 있는 급식관리지원 서비스의 지속 제공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 추진 필요

3. 위탁사무 내용

○ 하남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

- 핵심(필수)사업 추진 : 방문순회지도, 대상별 교육, 식단 등 정보제공
 - ※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의거 추진
- 자체 특화사업 추진 : 위생 및 영양 특화사업 발굴, 식생활 교육, 홍보사업 등

4. 위탁시설 개요

구분	하남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
소재지	신장동로 35, 203호(사무실) / 신장동로 29번안길 22, 1층(체험관)
규모	사무실 : 145.08㎡ / 체험관 : 142.19㎡
현원	16명

5. 민간위탁기간 : 위·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

- 2026.1.1.~2028.12.31.(3년)

6. 수탁자 선정방식

- 기존 수탁기관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(대표자 박태식)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재위탁 심사
-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,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미만(100점 만점)일 경우 선정 제외 및 공개모집 절차 이행

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(국비50%, 도비10% 시비40%)

(단위 : 천원)

구분	'25년 예산액	산출근거	비고
하남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	848,000	- 인건비 : 557,819 - 운영비 : 260,280 - 자산취득비 등 : 29,901	

8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 적정
- 사업 연속성과 종사자 고용 안정성, 지역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우선 검토 필요

9. 성과평가 결과

- 「하남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21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
- 심사위원 3인(장애인복지관 관장, 종합사회복지관 관장, 위생관리팀장)의 성과평가 실시 (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위원 2인 선정)
 - 평가점수 (어린이분야 100.21점, 사회복지분야 98.99점)
 - * 만점기준 : 100점이나 어린이분야의 경우 가점이 있어 만점 초과
-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됨

10. 향후 추진계획

- 2025. 9월 중 :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
- 2025. 10월 중 : 계약체결

11. 관련 법령 : 붙임 1

붙임 1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

【관련법령】
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21조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·운영)
 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(이하 "급식소"라 한다)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(이하 "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"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-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(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)
 -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
 2. 「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」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,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- 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5조(사회복지급식관리

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설치·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
 2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관리 지도
 3.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·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
 4.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
-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,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-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,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